

판 결

사 건

[REDACTED]

원 고

[REDACTED]

[REDACTED]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

담당변호사 조효동

피 고

[REDACTED]

[REDACTED]

변 론 종 결

[REDACTED]

판 결 선 고

[REDACTED]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,000,000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